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이광일 소유물건(2025타경7634)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감정평가서번호: 250321-A64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원감정평가사사무소

#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정 철 유

감정평가액	삼십이억팔천사백오십이만육천팔백원정(₩3,284,526,8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광일 (2025타경7634)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4.07	2025.03.25 ~ 2025.04.07	2025.04.07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472.4	토지	472.4	6,370,000	3,009,188,000
	건물	539.88	건물	539.88	510,000	275,338,800
		이	하	여	백	
합 계					₩3,284,526,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5-5	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472.4	472.4	6,370,000	3,009,188,000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60	75-5 위 지상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무소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무소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 주택(1)	200  200  139.88	539.88	510,000	275,338,800	880,000 x 29/50
<b>합 계</b>								<b>₩3,284,526,8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5-5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대구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 2. 대상물건의 개요

기호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면적(㎡)
1	토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5-5	대	472.4
2	건물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5-5 위 지상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539.88

###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 4. 감정평가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5.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4월 07일로 하였습니다.

## 6. 감정평가방법

### 1) 토지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2) 건물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법 외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 7. 기타사항

1)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 및 인근 동유형 건물의 표준적이고 통상적인 마감상태 등을 참작하고, 외부관찰 및 현지 조사된 내용 등을 기초로 평가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2 건물의 3층 발코니 확장부분, 옥상층 태양광설비 등은 구조 및 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 1.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 토지단가

#### 1) 비교표준지의 선정

#####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다음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 2025.01.01]

기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원/㎡)
가	중동	72-2	553.10	대	업무용	1종일주	광대한면	세장형평지	2,899,000

##### (2)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②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④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이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2) 시점수정

### (1) 개요

시정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미고시월은 최종 고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 (2) 지가변동률

용도지역	기간	변동률 (%)	계산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지역	2025.01.01 ~ 2025.04.07	0.393	2025.01.01 ~ 2025.02.28 : 0.237 2025.02.01 ~ 2025.02.28 : 0.115 $( 1 + 0.00237 ) * ( 1 + 0.00115 * 38/28 )$ ≒ 1.00393

## 3) 지역요인 비교

본건 인근지역에 비교 표준지가 소재하여 지역요인 비교는 대등합니다. (1.000)

## 4) 개별요인 비교

### (1) 개별요인 비교 항목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보도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공공시설의 접근성	상업지역 중심의 접근성
		공공시설의 접근성 (관공서 등)
	교통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주차시설의 양부
		교통규제의 정도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	고객의 유동성 및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접면 너비 및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수익의 차이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2) 개별요인 비교치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격차율 및 검토의견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검토의견 :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제반 개별요인에서 대등합니다.							

### 5)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를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대법원판례[2003다 38207(2004.05.14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거래사례나 평가전례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였습니다.

#### (2) 인근 거래사례 및 평가전례 [자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등]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1	중동	7□-7	대	1종일주	2024.04.09	6,280,000	담보평가
2	중동	7□-1	대	1종일주	2023.07.18	6,450,000	담보평가
3	중동	4□-16	대	1종일주	2023.04.21	5,920,000	담보평가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비고
4	중동	7□-1 외	대	1종일주	2023.03.23	5,930,000	거래사례
	토지·건물 일괄거래금액 : 5,300,000,000 거래후 건물 철거로서 별도 건물배분은 적용하지 않음. 토지단가 : 5,300,000,000 / 893.2 ≙ 5,930,000/㎡						

###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식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전례기준 표준지가격}}{\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평가전례기준 표준지가격 ≙ 평가전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의 선정

상기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제반 가치형성요인에서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평가전례 기호(1)을 선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평가전례 (원/㎡)	시점수정 - a)	지역요인 - b)	개별요인 - c)	산출단가 (원/㎡)	보정치
평가전례기준 표준지가격	6,280,000	1.01485	1.000	1.000	6,373,258	2.190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산출단가 (원/㎡)	
기준시점현재 표준지가격	2,899,000	1.00393			2,910,393	

- a) 시점수정

용도지역	기간	변동률 (%)	계산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지역	24.04.09~ 25.04.07	1.485	2024.04.01 ~ 2024.04.30 : 0.089 2024.05.01 ~ 2024.05.31 : 0.087 2024.06.01 ~ 2024.06.30 : 0.109 2024.07.01 ~ 2024.07.31 : 0.110 2024.08.01 ~ 2024.08.31 : 0.135 2024.09.01 ~ 2024.09.30 : 0.157 2024.10.01 ~ 2024.10.31 : 0.126 2024.11.01 ~ 2024.11.30 : 0.159 2024.12.01 ~ 2024.12.31 : 0.134 2025.01.01 ~ 2025.02.28 : 0.237 2025.02.01 ~ 2025.02.28 : 0.115  $( 1 + 0.00089 * 22/30 ) * ( 1 + 0.00087 ) * ( 1 + 0.00109 ) * ( 1 + 0.00110 ) * ( 1 + 0.00135 ) * ( 1 + 0.00157 ) * ( 1 + 0.00126 ) * ( 1 + 0.00159 ) * ( 1 + 0.00134 ) * ( 1 + 0.00237 ) * ( 1 + 0.00115 * 38/28 )$ $\approx 1.01485$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b) 지역요인 : 평가전례는 표준지의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 c) 개별요인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격차율 및 검토의견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검토의견 : 표준지는 평가전례와 제반 개별요인에서 대등합니다.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산정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거래사례가격 및 시장상황, 인근 유사토지의 평가전례,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2.19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2,899,000	1.00393	1.00	1.000	2.19	6,373,761	6,370,0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 1) 거래사례의 선정

##### (1)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1	중동	7□-1 외	대	1종일주	2023.03.23	5,930,000
	토지·건물 일괄거래금액 : 5,300,000,000 거래후 건물 철거로서 별도 건물배분은 적용하지 않음. 토지단가 : 5,300,000,000 / 893.2 ≒ 5,930,000/㎡					

##### (2) 거래사례 선정이유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으며,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상기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2) 사정보정

#### (1) 개요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2) 사정보정치 결정

결정의견	보정치
상기 비교 거래사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으며, 정상적이고 적정한 거래사례로 판단되는바, 별도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습니다.	1.00

### 3) 시점수정

구분	기간	변동률 (%)	계산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지역	23.03.23~ 25.04.07	2.064	2023.03.01 ~ 2023.03.31 : -0.070 2023.04.01 ~ 2023.04.30 : -0.046 2023.05.01 ~ 2023.05.31 : -0.051 2023.06.01 ~ 2023.06.30 : -0.019 2023.07.01 ~ 2023.07.31 : 0.063 2023.08.01 ~ 2023.08.31 : 0.069 2023.09.01 ~ 2023.09.30 : 0.075 2023.10.01 ~ 2023.10.31 : 0.121 2023.11.01 ~ 2023.11.30 : 0.109 2023.12.01 ~ 2023.12.31 : 0.076 2024.01.01 ~ 2024.12.31 : 1.282 2025.01.01 ~ 2025.02.28 : 0.237 2025.02.01 ~ 2025.02.28 : 0.115  $( 1 - 0.00070 * 9/31 ) * ( 1 - 0.00046 ) * ( 1 - 0.00051 ) * ( 1 - 0.00019 ) * ( 1 + 0.00063 ) * ( 1 + 0.00069 ) * ( 1 + 0.00075 ) * ( 1 + 0.00121 ) * ( 1 + 0.00109 ) * ( 1 + 0.00076 ) * ( 1 + 0.01282 ) * ( 1 + 0.00237 ) * ( 1 + 0.00115 * 38/28 )$ $\approx 1.02064$

### 4) 지역요인 비교

대상 토지와 비교 거래사례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 유사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1.0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5) 개별요인 비교

구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치
격차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및 검토의견	검토의견 : 본건은 거래사례와 제반 개별요인에서 대등합니다.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비교사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5,930,000	1.00	1.02064	1.00	1.000	6,052,395	6,050,0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3. 시산가액의 조정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 1) 각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1	6,370,000	6,050,000

#### 2) 토지가액의 결정

상기 각 시산가액을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 및 제반 가격자료에 의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감정평가목적 등에도 부합하는바, 다음과 같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최종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토지단가(원/㎡)	면적(㎡)		금액(원)
		공부	사정	
1	6,370,000	472.4	472.4	3,009,188,000
합계				<b>3,009,188,000</b>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Ⅲ. 건물가액의 산출근거

#### 1. 대상건물의 개요

기호	구조	층수	면적 (㎡)	주용도	사용승인일 (증축일자)
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539.88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003. 12. 11

#### 2. 재조달원가의 산정

##### 1) 표준단가

[자료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2024]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원/㎡)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808,000	45~55

##### 2) 재조달원가 결정

대상 건물의 구조, 용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건축 표준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건물의 사용자재, 외부마감, 시공상태, 부대설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재조달원가 (원/㎡)
2	880,0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3. 감가수정

기호	내용년수	유효 경과년수	잔존 내용년수	감가수정
2	50	21	29	29/50

### 4. 대상건물 적용단가의 결정

기호	재조달원가(원/㎡)	감가수정	적용단가(원/㎡)
2	880,000	29/50	510,000

### 5. 대상건물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적용단가(원/㎡)	면적(㎡)		감정평가액(원)
		공부	사정	
2	510,000	539.88	539.88	275,338,800
합계				275,338,8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종별	면적(㎡)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의뢰	사정		
1	토지	472.4	472.4	6,370,000	3,009,188,000
2	건물	539.88	539.88	510,000	275,338,800
합계					3,284,526,800

### 2.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상기 감정평가액은 관계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으며, 제반가격자료 및 평가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최종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소재 희망로네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 생활시설, 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2) 교통상황

본건 인근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볼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3) 형태 및 이용상태

세장형이며, 주상용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4)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노폭 약25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합니다.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br>(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br>(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br>(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사용승인일 : 2003.12.11  
외 벽 : 몰탈위페인트,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 호 : 강화유리 및 새시 등 마감.

## (2) 이용상태

1층 : 근린생활시설  
2층 : 근린생활시설  
3층 : 주택 등

##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상층 태양광설비, 주택 난방설비 등 있습니다.

##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br>(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br>(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br>(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광역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5-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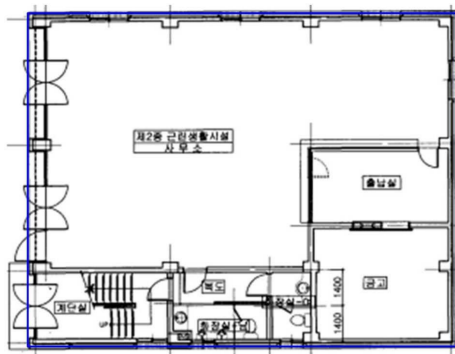


#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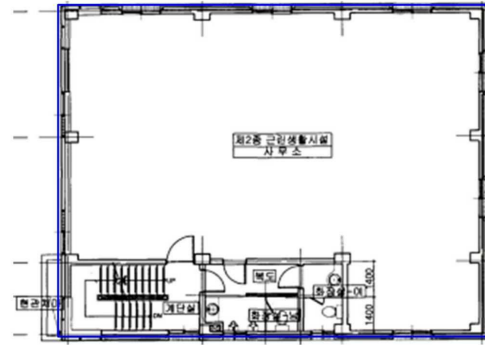


#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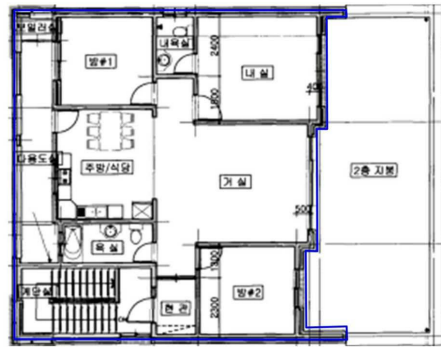
Scale :  
None



<1층>



<2층>



<3층>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00㎡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00㎡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39.88㎡

#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3층 확장부분 (본건 남측에서 촬영)